

2024년도 제1회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 청년인턴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채용등록 일정 공고

2024년도 제1회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 청년인턴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및 채용후보자 등록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26일
서울출입국·외국인청장

1. 합격자 명단

○ 최종 합격자(응시번호 순)

2401-0002	김○○	2401-0004	이○○	2401-0005	이○○
2401-0007	김○○	2401-0009	남○○	2401-0010	신○○
2401-0011	하○○				

○ 예비 합격자(예비합격 순위 순)

2401-0003	박○○	2401-0006	한○○	2401-0008	김○○
-----------	-----	-----------	-----	-----------	-----

2. 채용후보자 등록

- 대상자 : 최종합격자 7명
 - 등록기간 : 2024. 5. 2.(목) 18:00까지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 - 방문 등록 :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등록(대리등록 불가)
 - 등기우편 등록 : 접수마감일 소인분(빠른 등기)까지 유효한 등록으로 인정
- ※ 접수처: (우 08013)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,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 7층

총무과 채용담당자 앞(02-2650-6221)

○ 제출서류

- 주민등록부등본 1부
- 기본증명서(본인명의, 상세) 1부
- 가족관계증명서(본인명의, 상세) 1부
-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(가정법원 발행) 1부
- 채용신체검사서(공무원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) 1부
 - ※ 검사비용은 기관에서 부담하므로, 영수증 등 수검 증빙서류 제출 요함
 - ※ **최근 3개월 이내 실시한 국가건강검진 검진서로 대체 가능**
- 반명함판(3cm×4cm) 사진 2매(최근 3개월 이내 촬영)
- 통장 사본 1부(본인 명의 통장에 한함)
-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**【별첨 1】**

3. 참고사항

- 근로개시 예정일은 2024년 5월 7일(화)이며, 채용후보자로 등록한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
-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년인턴으로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, **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[별첨2]의 등록 포기서(이메일*)**를 제출바랍니다.
 - * **hhf2485@korea.kr(응시원서 접수 시 이메일)**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희,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시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 합격자에 대해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계약포기, 선발취소,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비 합격자의 채용 의사를 확인한 후 추가 합격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사항은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 총무과(02-2650-6221)로 문의바랍니다.

【별첨 1】

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9호 서식]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	채용방법	채용직위(직급)
	채용사유		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
	연락처	생년월일	채용 예정일

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② 예외 해당 여부	①에서 “예”에 답변한 경우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?	[] 예 [] 아니오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① “가족채용”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.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